

학교기업 설치·운영 규정

제정 2017. 08.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41조, 「경동대학교 학칙」 제58조의 2에 따라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3조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계획) ①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전공(학부, 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출된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대학 홈페이지, 웹메일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교기업의 설치에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허가한다.

④ 총장이 학교기업의 설치를 허가할 경우, 학교기업의 소재지와 사업종목, 관련 전공 또는 교육과정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⑤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학교기업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경동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실험·실습 시설 등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수선 또는 용역 제공 활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

③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실습활동을 통한 생산품목의 판매가 가능하고, 외부기업과의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한다.

제5조 (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대학의 교지 내로 한다. 다만, 학교기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거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지 밖에 둘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6조 (조직) ① 학교기업의 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

입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학교기업을 총괄한다.

③ 총장은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기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은 학교기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학교기업 관련 전공(학부, 학과)은 교과과정의 운영 등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8조 (현장실습 기관 선정 및 학점인정) ①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직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학교기업은 본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현장실습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현장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재학생은 본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및 심의사항) ①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기획조정처장, 교학처장, 산학취업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학교기업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대학 내 교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교기업 예산의 승인 및 결산
2. 재정투자계획 및 수익창출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및 학생의 보상금에 대한 사항
4. 시설 및 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기업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1조(재정)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고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산학협력단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기부금

- 4. 학교기업의 운영 수익금
- 5. 기타수입 등

제12조(회계) ① 학교기업은 본 대학 산학협력단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② 학교기업의 장은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에 의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교기업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④ 학교기업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제13조(보상금) 학교기업의 장은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교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학교기업 자체 감사 내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학교기업의 해산

제15조(학교기업의 해산) ① 총장은 학교기업이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 ② 해산되는 학교기업의 자산은 본 대학으로 귀속된다.
- ③ 해산되는 학교기업의 종업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학교기업의 폐지와 동시에 해지된 것으로 하며, 본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